

	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	규정번호	3-1-5
		제정일자	2017.09.01.
		개정일자	2020.07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 (성과혁신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수요자만족도에 대한 정보의 수집,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육수요자만족도(이하 ”만족도“라 한다)”란 대학이 제공하는 유형, 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표현하는 지수를 말한다.
2. “조사대상”이라 함은 대학으로부터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를 말하며, 대학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 대학의 유형, 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, 분석, 평가 및 개선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책임과 권한

제4조(주관부서) ① 만족도 관리의 총괄부서는 전략기획처로 하고, 실무는 성과혁신센터에서 담당한다.

② 만족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
2. 만족도 결과의 분석 및 평가
3. 관련부서 개선활동 실적 점검

제5조(관련부서) 만족도 관련부서는 조사항목과 관련한 부서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은 공통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만족도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
2. 개선활동 실적 분석 및 주관부서 통보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만족도 조사의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를 위해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전략기획처장과 성과혁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당연직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성과혁신센터장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조사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

3.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
4. 개선계획 및 개선실적에 관한 사항

제8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장 업무절차

제11조(조사계획의 수립) 주관부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조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
2. 조사대상
3. 조사시기 및 일정
4. 조사방법
5. 조사항목
6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12조(조사표본) 만족도 조사표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학생의 조사표본수는 재학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.
2. 졸업생의 조사표본수는 당해연도 졸업생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.
3. 산업체의 조사표본수는 현장실습 및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으로 조사연도 졸업생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4. 대학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조사표본수는 별도로 정한다.
5. 기타 만족도조사의 조사표본수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(조사의 실시 및 보고) ① 만족도 조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2. 졸업생, 산업체 및 대학 이해 당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
- ②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전략기획처장은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4조(환류체계) ① 전략기획처장은 만족도 결과를 부서 및 학과에 공지한다.

- ② 관련부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교육 및 행정 등에 반영한다.
- ③ 성과혁신센터는 관련부서의 개선활동 결과를 종합하고 개선실적을 점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